

## 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비”

노동부는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로 6월 달에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이 실시되었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기가 빨리 시작되거나 급격히 날씨가 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점검 시기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 현장,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연폐 현장, 추락·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등 총 800여 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침수 및 토사붕괴에 대한 예방조치, 추락 및 낙하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 감전재해 예방조치,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관리의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석면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전자현미경 석면분석 숙련도 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밝힌바에 따르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이 80여개 전자현미경 석면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오차점수 0.00점을 받았다. 합격기준치는 2.00점 미만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미국과 전세계 산업체와 과학계의 기술표준 및 측정표준을 개발, 지원하는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전자현미경 석면분석 숙련도에 대한 테스트를 비롯해 석면분석 수행능력과 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분석 숙련도에 대한 테스트는 NIST가 평가를 신청한 미국 및 전세계 석면 분석기관들에게 석면분석 시료를 보낸 뒤 분석기관들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정확도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로 전자현미경을 이용



한 석면분석 방법을 정립해왔으며 이를 통한 석면의 정밀분석과 직업병 판정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정선 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장은 “이번 석면분석 숙련도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현미경 석면분석에 관한 국제적인 기술력을 검증받게 됐다”면서 “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도급 업체의 안전사고,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책임無

하도급 업체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도급업체가 직접·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2명을 사상자를 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홍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정읍시 고부면이 발주한 농로 포장공사 원청 업체인 홍씨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6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등 2건의 안전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홍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을 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공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만 전화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 건축법 개정 통해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좀 더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 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대책으로는 컨베이어벨트 등 고정식 설비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에는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계가 늘고 있어 이 기준을 더욱 강화했

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4천㎡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하여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때 피난시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발코니의 바닥에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우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멸실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온라인 노동민원 수수료 '완전면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 수료를 내지 않게 됐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 면제는 노동부가 전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인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 선박 건조시부터 해체시까지 유해물질 관리된다

지난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외교회의에서 참석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됐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선박 건조시에는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하는 방오도료이다. 또한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등은 선박 건조시부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을 제한했다.

또 선박 해체 시에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해야 한다. 해안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해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고 해당 선박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세계상선선복량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이 가입국선복량의 3%이상인 15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발효요건을 엄격히 하여 채택됐다. 현존선박의 선내 유해물질 목록작성은 협약 발효 후 최대 5년간 유예된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67개의 선박재활용업체에서 239척(총톤수 500톤 이상 26척, 500톤 미만 213척, 08년 기준)의 선박이 해체되고 있다.